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61호

**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
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(2018.04.12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8일
서울특별시장

I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
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 없음)

지구명	유형	위치	면적(㎡)	지정목적
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	중심지형	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	478,515㎡	•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·유통·업무·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

2.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
3.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
- 1) 촉진구역(변경 없음)

- 2) 촉진계획(변경 없음)

- (1)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
- (2)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- (3) 정비기반시설 계획(변경 없음)

- (4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
(5) 기타사항(변경 없음)

5.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- 1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- 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 - (1) 최대개발규모(변경 없음)
 - (2) 공동건축지정 기준(변경 없음)
 - (3)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분	가구 번호	획지 번호	면적 (㎡)	획지		공동건축
				위치	면적(㎡)	
기정	2	40	651	미아동 460-110	294	공동건축지정 460-111
				미아동 460-111	357	공동건축지정 460-110
변경	2	40	658	미아동 460-110	294	공동건축지정 460-111
				미아동 460-111	357	공동건축지정 460-110
				미아동 62-38	7	-

※ 획지2-40외의 획지는 변경 없음

■ 변경사유

위치	변경 내용	변경 사유
강북구 미아동 460-110 외 2필지 (획지번호2-40)	○ 기 결정된 획지2-40(미아동 460-110, -111)와 접한 미아동 62-38을 통합하여 하나의 획지로 변경	○ 미아동 62-38번지는 건축이 불가한 과소필지이며, 간선변에 접한 전면필지로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조화로운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획지 2-40 (미아동 460-110, -111)과 통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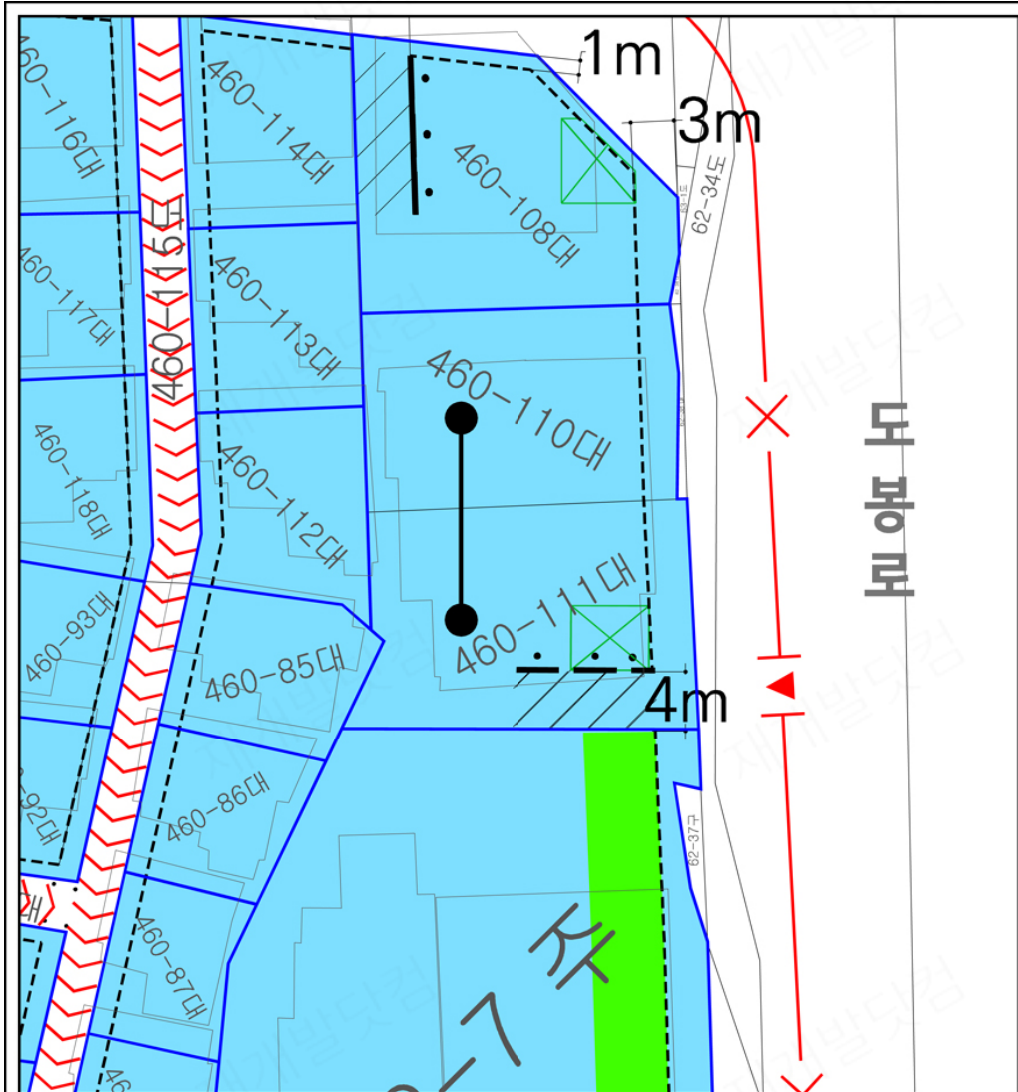
- (4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- (5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- (6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- (7)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(변경 없음)

II. 관계도면 : 불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준비된 도면 참조)

※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III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0)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02-901-6852, 6854)에 관계도서를 준비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○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기정)



미아중심

재정비촉진지구(강북구)

재정비촉진계획

- 미아동 460-110번지 외 2필지 -

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범례

	재정비촉진지구계		공개공지
	축전구역계		별지공지
	특별계획구역		차량출입금지구역
	획지선		공동주차출입구
	건축완계선		주차출입구
	저층부벽면완계선		공동개입(지장)
	공공공지		공동개입(관정)
	보치현용도로		공동보행도로(지장)
	주차출입도로		

대지 지형

MR1	460-110	50%	1,200v
MR2	460-111	50%	1,200v
GR1	460-112	50%	800v

지상높이	지형도
기초지반	지형도
지형도	지형도

Scale = 1 : 500

○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변경)

